

# 국제교류원 운영 규정



## 한국항공대학교

## 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20.8.24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## 국제교류원 운영 규정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국제교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조직 및 기능)** ① 국제교류원에 국제교류팀을 두며, 조직 및 해당 업무분장은 본교 『직제규정』 및 『사무분장 규정』에 따른다.

② 국제교류원의 기능 및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.

1. 국제교류 프로그램 주관 : 국제학생교류 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, 교환학생 및 해외연수 파견학생 선발 및 지원, 국제하계강좌 운영 등
2. 외국인학생 선발 및 지원 : 외국인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, 외국인학생 학사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, 외국인학생 고충상담 사항, 외국인학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,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에 관한 사항 등
3. 한국어교육과정 운영 : 한국어교육 학생 선발, 교육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, 한국어 강사임용 관련 사항, 한국어 등록금 수납 및 결산 업무 등

**제3조 (원장 및 교직원)** ① 국제교류원에는 원장을 두며,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원장은 임기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 국제교류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원장은 국제교류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요원을 기간제로 임명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**제4조 (운영위원회)** ① 국제교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심의기구로서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제교류원장으로 하며,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국제교류원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5조 (교육과정 운영 등)** 국제교류원의 교육과정 운영, 외국인 학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내규 또는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.

**제6조 (준용)** 본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관련 학칙 및 규정을 준용하되, 『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』(교육부) 및 『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』(법무부)을 참고할 수 있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7일 부터 시행하되, 2018년 10월 22일부터 적용한다.
- ② 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『국제문화원 규정』과 『국제문화원 규정 시행세칙』은 폐지한다.
- ③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